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48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개정 2017.10.24 시행 2018.10.25)에 따른 후속조치와 법률에 근거 없는 방재단원들의 교육수강 의무 삭제 및 여비규정 보완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 등(안 제10조제9항 및 제11항)

- '식대, 여비, 유류대'를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로 일부개정
- 제10조제9항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

나. 교육(안 13조제2항 및 제3항)

- 단장 및 임원, 직원에 대한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교육 사항 삭제

다. 재해보상(안 제17조) <신설>

○ 재해보상금의 청구 방법 등(제1항)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서식에 따라 방재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청구
- 방재단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

○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결정 등(제2항)

-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결정

○ 재해보상금의 유족 순위 등(제3항 및 제4항)

-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3조까지의 상속순위에 따른 유족 순위 결정

○ 재해보상금의 환수(제5항)

-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 후 환수

라. 별지서식 추가

- 별지 제9호서식 ‘보상청구서’ 신규 추가

마. 기타사항 정비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용어 및 표현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7.10. ~ 7.30.)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가족정책과(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강서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강서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단장 1인”을 “단장 1명”으로 “부단장1인”을 “부단장 1명”으로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찬성에 의하여”를 “찬성에 따라”로 “서식에 의거”를 “서식에 따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별지제2호”를 “별지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를 “강서구”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찬성을 득한 자로”를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강서구외”를 “강서구 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활동하는데”를 “활동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

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위반한 자”를 “위반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의에 의하여”를 “건의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 중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를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비 등에 대하여”를 “장비 등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합동근무시기,인원,조건,임무”를 “합동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600-6119)”를 “(1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에 따라”로 “다음해”를 “다음 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식대, 여비, 유류대”를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제9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중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3조까지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

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과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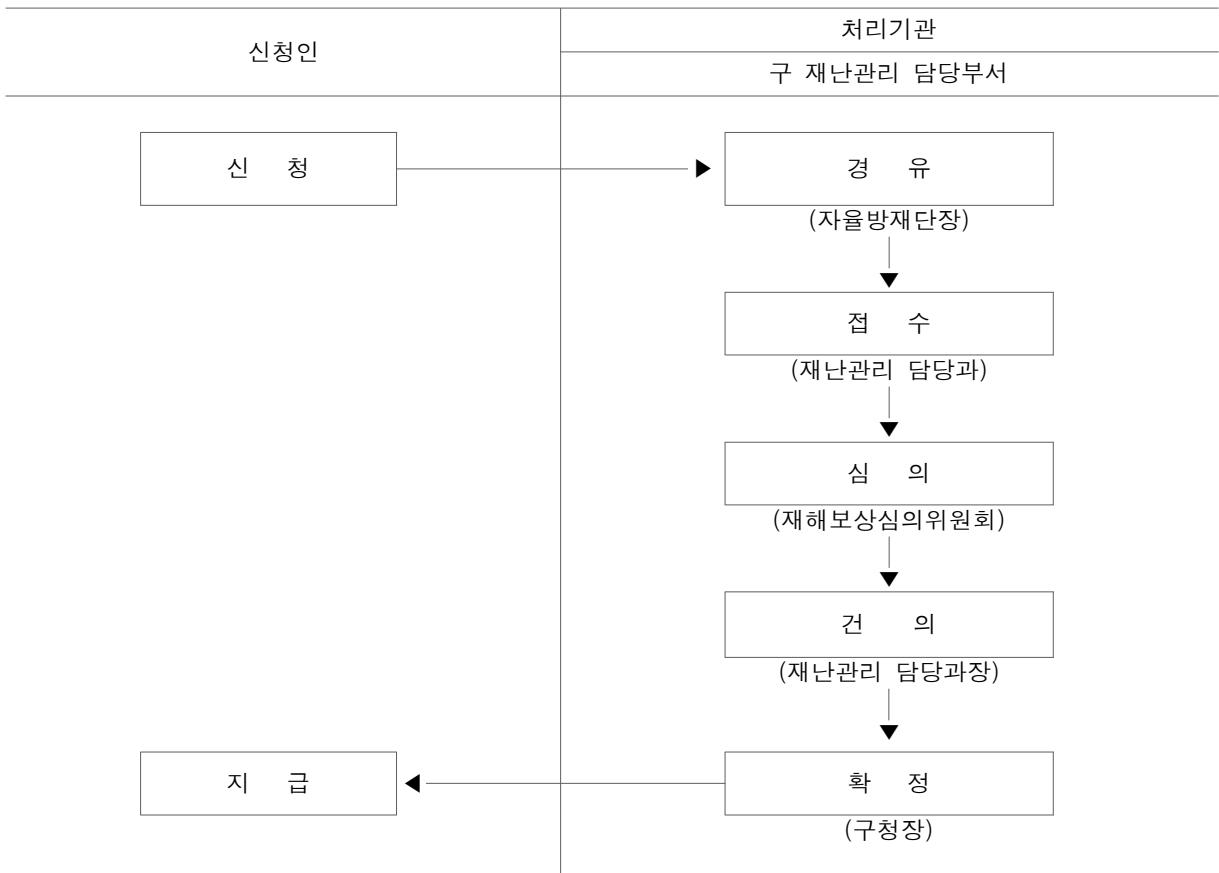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 ----- ----- ----- ----- -----.</p>
<p>제2조(명칭) 명칭은 <u>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u>(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p>	<p>제2조(명칭) ----- <u>서울특별시강서구</u> ----- -----.</p>
<p>제3조(설치) 방재단은 <u>서울특별시강서구</u>에 설치한다.</p>	<p>제3조(설치) ----- <u>서울특별시강서구</u>(이하 “강서구”라 한다)----- -----.</p>
<p>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u>단장 1인, 부단장1인, 간사 1인</u>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p> <p>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u>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4조(조직) ① -----<u>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u>----- -----.</p> <p>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 별지 제1호 <u>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 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 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⑨ (생략)

⑩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6조(해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수 있다 .

1. (생략)

⑤ -----

-----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
-----.

⑥ (현행과 같음)

⑦ -----
--- 강서구 -----

-----.

⑧·⑨ (현행과 같음)

⑩ -----

-----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

제6조(해임) -----

-----.

1. (현행과 같음)

2. 단원이 강서구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생략)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6.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생략)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가입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방재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2. ----- 강서구 외 -----
----- . ----- 활동하는 데

----- .

3. -----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6. ----- 위반한 사람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정하는 사람 - 30명
----- .

③ -----
----- 따라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임무) ①·② (생략)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 4. (생략)
-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 6. ~ 10. (생략)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생략)

제10조(운영 등) ① (생략)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강서구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제8조(임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 주민 대피 유도, 차량통제 --
- 6. ~ 10. (현행과 같음)

④ -----
----- 장비 등을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식
에 따른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합동근무시기,인원,조건,임무 등에 대해서는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재난방지신고 전화를 (2600-6119)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별지제7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8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여비,유류대 등 필수 경비

합동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

⑤ -----
----- 1명-----

--.

⑥ -----

---(120)-----
-----.

⑦ ----- 서식에 따라 ----- 다음 해-----
-----.

⑧ (현행과 같음)

⑨ ----- 범위-----

-----.

1. -----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

2. ~ 6. (생략)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⑩ (생략)

<신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7. ----- 그 밖에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9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교육) ① -----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

-----.

<삭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중앙지원단의 자문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중앙지원단의 자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

-----.

제17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
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
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
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
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
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3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
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
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
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
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
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7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다음의 재해보상금 지급 비용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매년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재해보상 단원이나 유족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 재해보상 비용은 피해발생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피해의 유형과 피해규모, 범위 등에 따라 비용 규모가 유동적임으로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피해 발생에 따라 예비비, 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4. 작 성 자

- 안전교통국 안전관리과(담당자 : 행정7급 박현철 2600-6439)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개정사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법률에 근거 없는 교육수강 의무 삭제
- 여비규정 보완

□ 주요내용

-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단장 및 임원, 직원에 대한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교육 사항 삭제(안 제13조)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
(안 제10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설
하고, 방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지원범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19 - 20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안전관리과	통보(조치)일		2019. 7. 3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26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안전관리과	
	담당자명	박현철	전화번호 02-2600-643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관리과)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개정 2017.10.24 시행 2018.10.25)에 따른 후속조치와 법률에 근거 없는 방재단원들의 교육수강 의무 삭제 및 여비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2019년 07월 31일</p> <p>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p> <p>(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p> <p>안전관리과장 귀하</p>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10.25]]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10.25]]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31]

□ [별표 4]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27조의3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